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01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김재원·강경숙·황운하

신장식 · 임오경 · 어기구

이해민 · 정춘생 · 차규근

김선민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

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영화상영관 경영자는"을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 망에 가입한 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
산망) ① (생 략)	산망) ① (현행과 같음)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
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	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
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	는 <u>는</u>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	
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	
화(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	

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 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 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 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 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u>한다.</u>

③ (현행과 같음)